어울림

김포 양곡택지개발지구 한강 금호어울림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 입주자모집공고

금호건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11.24 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1.1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으로 나뉘며, 각각 별도의 단지로 구분됩니다. 청약 시 단지 및 해당 주택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는 별개의 단지로서 청약 일정은 동일하나 당첨자 발표일은 다르므로 일반공급 신청은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제외).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1단지(D-1블록) 당첨자는 2단지(B-2블록) 당첨자 배정에서 제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특별공급은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 중 하나의 단지에만 청약 가능함] ■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의 당첨자발표일이 상이하며, 각 단지별로 1인 1건 청약 가능합니다.(단, 동일 단지 내에서 1인 2건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보유한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으나, 두 개 블록에 중복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블록의 당첨만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오니 청약통장이 없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후 청약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포함)인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김포시 1년 이상(2017.01.11(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2017.07.11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가 배정된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 배정에서 낙첨된 자는 나머지 50%가 배정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김포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본 아파트는 2007.09.01.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가점제 제한 청약자의 경우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미달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gkhapt.com)에 공개되며, 예비입주자 지위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 – 청약통장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 발생요건 완화 :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발생 요건은 "1년,12회 납입"으로 변경(단, 청약통장별 해당 가입은행의 납입인정 예치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이며, 청약은 "1, 2순위"방식으로 간소화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3개월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기간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 분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전용면적 85㎡이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당첨일로부터 3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만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시에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hgkhapt.com)을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 견본주택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7.11.2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단지(D-1블록) 김포시청 주택과 – 2515호(2018.01.1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2단지(B-2블록) 김포시청 주택과 – 2516호(2018.01.1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1단지(D-1블록)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68번지(양곡택지개발지구 D-1블록) / 2단지(B-2블록)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41번지(양곡택지개발지구 B-2블록)

■ 공급규모 : 1단지(D-1블록)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9~20층 5개동 총 4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274세대, 특별공급 132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0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2세대)포함]

2단지(B-2블록)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9~20층 6개동 총 4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315세대, 특별공급 152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4세대)포함]

■ 공급대상 및 면적 [1단지(D-1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면적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민영주택	2018000011-01	59.8284A	59.8284	20.8501	80.6785	30.0764	110.7549	42.1158	40	4	4	4	3	25	2	2020년 03월
	2018000011-02	59.9700B	59.9700	21.3186	81.2886	30.1475	111.4361	42.2155	19	2	2	2	–	13	1	
	2018000011-03	59.6003C	59.6003	21.5179	81.1182	29.9617	111.0799	41.9552	20	2	2	2	–	14	1	
	2018000011-04	77.9681A	77.9681	22.4244	100.3925	39.1954	139.5879	54.8851	136	13	13	13	3	94	7	
	2018000011-05	77.7481B	77.7481	22.9128	100.6609	39.0848	139.7457	54.7302	38	4	4	4	–	26	2	
	2018000011-06	77.5745C	77.5745	23.1739	100.7484	38.9974	139.7458	54.6080	58	5	5	5	3	40	3	
	2018000011-07	77.6365D	77.6365	22.3110	99.9475	39.0287	138.9762	54.6517	19	2	2	2	–	13	1	
	2018000011-08	84.9940A	84.9940	24.9151	109.9091	42.7274	152.6365	59.8309	38	4	4	4	3	23	2	
	2018000011-09	84.9416B	84.9416	25.9760	110.9176	42.7010	153.6186	59.7940	18	2	2	2	–	12	1	
	2018000011-10	84.8209C	84.8209	25.7834	110.6043	42.6404	153.2447	59.7091	20	2	2	2	–	14	1	
	계								406	40	40	40	12	274	21	

■ 공급대상 및 면적 [2단지(B-2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면적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민영주택	2018000012-01	77.9681A	77.9681	22.4731	100.4412	37.4045	137.8457	54.5991	99	10	10	10	3	66	5	2020년 03월
	2018000012-02	77.7481B	77.7481	22.9613	100.7094	37.2991	138.0085	54.4450	19	2	2	2	–	13	1	
	2018000012-03	77.5745C	77.5745	23.2223	100.7968	37.2158	138.0126	54.3234	40	4	4	4	–	28	2	
	2018000012-04	84.9940A	84.9940	25.2397	110.2337	40.7752	151.0089	59.5191	154	15	15	15	5	104	8	
	2018000012-05	84.9416B	84.9416	26.3004	111.2420	40.7500	151.9920	59.4824	95	9	9	9	3	65	5	
	2018000012-06	84.8209C	84.8209	26.1073	110.9282	40.6923	151.6205	59.3979	60	6	6	6	3	39	3	
	계								467	46	46	46	14	315	24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블록별 면적이 각각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위세대 계약면적 등은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1단지(D-1블록)]

(단위 : ㎡, 원)

주택형	구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1회 계약시	2회 2018-03-25	중도금(30%) 1회 2018-09-25	2회 2019-05-25	3회 2019-10-25	잔금(60%) 입주지정일
59.8284A	59A	40	1층	2	73,714,664	142,885,336	216,600,000	10,000,000	11,660,000	21,660,000	21,660,000	21,660,000	129,960,000
			2층	2	73,714,664	150,285,336	224,000,000	10,000,000	1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134,400,000
			3층	2	73,714,664	157,585,336	231,300,000	10,000,000	13,130,000	23,130,000	23,130,000	23,130,000	138,780,000
			4층	2	73,714,664	167,485,336	241,200,000	10,000,000	14,120,000	24,120,000	24,120,000	24,120,000	144,720,000
			5층~9층	10	73,714,664	172,385,336	246,100,000	10,000,000	14,610,000	24,610,000	24,610,000	24,610,000	147,660,000
			10층이상	22	73,714,664	174,885,336	248,600,000	10,000,000	14,860,000	24,860,000	24,860,000	24,860,000	149,160,000
59.9700B	59B	19	2층	1	73,889,168	151,810,832	225,700,000	10,000,000	12,570,000	22,570,000	22,570,000	22,570,000	135,420,000
			3층	1	73,889,168	159,210,832	233,100,000	10,000,000	13,310,000	23,310,000	23,310,000	23,310,000	139,860,000
			4층	1	73,889,168	169,110,832	243,000,000	10,000,000	14,300,000	24,300,000	24,300,000	24,300,000	145,800,000
			5층~9층	5	73,889,168	174,110,832	248,000,000	10,000,000	14,800,000	24,800,000	24,800,000	24,800,000	148,800,000
			10층이상	11	73,889,168	176,610,832	250,500,000	10,000,000	15,050,000	25,050,000	25,050,000	25,050,000	150,300,000
59.6003C	59C	20	1층	1	73,433,568	137,766,432	211,200,000	10,000,000	11,120,000	21,120,000	21,120,000	21,120,000	126,720,000
			2층	1	73,433,568	144,966,432	218,400,000	10,000,000	11,840,000	21,840,000	21,840,000	21,840,000	131,040,000
			3층	1	73,433,568	152,166,432	225,600,000	10,000,000	12,560,000	22,560,000	22,560,000	22,560,000	135,360,000
			4층	1	73,433,568	161,766,432	235,200,000	10,000,000	1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141,120,000
			5층~9층	5	73,433,568	166,566,432	240,000,000	10,000,000	14,000,000	24,000,000	24,000,000	24,000,000	144,000,000
			10층이상	11	73,433,568	168,966,432	242,400,000	10,000,000	1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145,440,000
77.9681A	77A	136	1층	4	96,064,582	165,735,418	261,800,000	10,000,000	16,180,000	26,180,000	26,180,000	26,180,000	157,080,000
			2층	7	96,064,582	174,635,418	270,700,000	10,000,000	17,070,000	27,070,000	27,070,000	27,070,000	162,420,000
			3층	7	96,064,582	183,635,418	279,700,000	10,000,000	17,97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167,820,000
			4층	7	96,064,582	195,535,418	291,600,000	10,000,000	19,160,000	29,160,000	29,160,000	29,160,000	174,960,000
			5층~9층	35	96,064,582	201,435,418	297,500,000	10,000,000	1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178,500,000
			10층이상	76	96,064,582	204,435,418	300,500,000	10,000,000	20,050,000	30,050,000	30,050,000	30,050,000	180,300,000
77.7481B	77B	38	2층	2	95,793,463	175,706,537	271,500,000	10,000,000	17,150,000	27,150,000	27,150,000	27,150,000	162,900,000
			3층	2	95,793,463	184,606,537	280,400,000	10,000,000	18,040,000	28,040,000	28,040,000	28,040,000	168,240,000
			4층	2	95,793,463	196,506,537	292,300,000	10,000,000	19,230,000	29,230,000	29,230,000	29,230,000	175,380,000
			5층~9층	10	95,793,463	202,506,537	298,300,000	10,000,000	19,830,000	29,830,000	29,830,000	29,830,000	178,980,000
			10층이상	22	95,793,463	205,506,537	301,300,000	10,000,000	2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180,780,000
77.5745C	77C	58	1층	2	95,579,578	159,220,422	254,800,000	10,000,000	15,480,000	25,480,000	25,480,000	25,480,000	152,880,000
			2층	3	95,579,578	167,920,422	263,500,000	10,000,000	16,350,000	26,350,000	26,350,000	26,350,000	158,100,000
			3층	3	95,579,578	176,620,422	272,200,000	10,000,000	17,220,000	27,220,000	27,220,000	27,220,000	163,320,000
			4층	3	95,579,578	188,220,422	283,800,000	10,000,000	18,380,000	28,380,000	28,380,000	28,380,000	170,280,000
			5층~9층	15	95,579,578	194,020,422	289,600,000	10,000,000	18,960,000	28,960,000	28,960,000	28,960,000	173,760,000
			10층이상	32	95,579,578	196,920,422	292,500,000	10,000,000	19,250,000	29,250,000	29,250,000	29,250,000	175,500,000
77.6365D	77D	19	2층	1	95,656,065	165,743,935	261,400,000	10,000,000	16,140,000	26,140,000	26,140,000	26,140,000	156,840,000
			3층	1	95,656,065	174,443,935	270,100,000	10,000,000	17,010,000	27,010,000	27,010,000	27,010,000	162,060,000
			4층	1	95,656,065	185,943,935	281,600,000	10,000,000	1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168,960,000
			5층~9층	5	95,656,065	191,643,935	287,300,000	10,000,000	18,730,000	28,730,000	28,730,000	28,730,000	172,380,000
			10층이상	11	95,656,065	194,543,935	290,200,000	10,000,000	19,020,000	29,020,000	29,020,000	29,020,000	174,120,000
84.9940A	84A	38	1층	1	104,721,143	167,878,857	272,600,000	10,000,000	17,260,000	27,260,000	27,260,000	27,260,000	163,560,000
			2층	2	104,721,143	177,178,857	281,900,000	10,000,000	18,19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169,140,000
			3층	2	104,721,143	186,478,857	291,200,000	10,000,000	1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174,720,000
			4층	2	104,721,143	198,778,857	303,500,000	10,000,000	2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182,100,000
			5층~9층	10	104,721,143	204,978,857	309,700,000	10,000,000	20,97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185,820,000
			10층이상	21	104,721,143	208,078,857	312,800,000	10,000,000	21,280,000	31,280,000	31,280,000	31,280,000	187,680,000
84.9416B	84B	18	2층	1	104,656,557	179,743,443	284,400,000	10,000,000	18,440,000	28,440,000	28,440,000	28,440,000	170,640,000
			3층	1	104,656,557	189,143,443	293,800,000	10,000,000	19,380,000	29,380,000	29,380,000	29,380,000	176,280,000
			4층	1	104,656,557	201,643,443	306,300,000	10,000,000	20,630,000	30,630,000	30,630,000	30,630,000	183,780,000
			5층~9층	5	104,656,557	207,943,443	312,600,000	10,000,000	21,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187,560,000
			10층이상	10	104,656,557	211,043,443	315,700,000	10,000,000	21,570,000	31,570,000	31,570,000	31,570,000	189,420,000
84.8209C	84C	20	1층	1	104,507,958	161,592,042	266,100,000	10,000,000	16,610,000	26,610,000	26,610,000	26,610,000	159,660,000
			2층	1	104,507,958	170,592,042	275,100,000	10,000,000	17,510,000	27,510,000	27,510,000	27,510,000	165,060,000
			3층	1	104,507,958	179,692,042	284,200,000	10,000,000	18,420,000	28,420,000	28,420,000	28,420,000	170,520,000
			4층	1	104,507,958	191,792,042	296,300,000	10,000,000	19,630,000	29,630,000	29,630,000	29,630,000	177,780,000
			5층~9층	5	104,507,958	197,792,042	302,300,000	10,000,000	20,230,000	30,230,000	30,230,000	30,230,000	181,380,000
			10층이상	11	104,507,958	200,892,042	305,400,000	10,000,000	2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183,240,00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2단지(B-2블록)]

(단위 : ㎡, 원)

주택형	구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1회 계약시	2회 2018-03-25	중도금(30%) 1회 2018-09-25	2회 2019-05-25	3회 2019-10-25	잔금(60%) 입주지정일
77.9681A	77A	99	1층	4	93,833,866	165,466,134	259,300,000	10,000,000	15,930,000	25,930,000	25,930,000	25,930,000	155,580,000
			2층	5	93,833,866	174,366,134	268,200,000	10,000,000	16,820,000	26,820,000	26,820,000	26,820,000	160,920,000
			3층	5	93,833,866	183,166,134	277,000,000	10,000,000	1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166,200,000
			4층	5	93,833,866	194,966,134	288,800,000	10,000,000	1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173,280,000
			5층~9층	25	93,833,866	200,866,134	294,700,000	10,000,000	1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176,820,000
			10층이상	55	93,833,866	203,766,134	297,600,000	10,000,000	19,760,000	29,760,000	29,760,000	29,760,000	178,560,000
77.7481B	77B	19	2층	1	93,569,030	175,330,970	268,900,000	10,000,000	16,890,000	26,890,000	26,890,000	26,890,000	161,340,000
			3층	1	93,569,030	184,230,970	277,800,000	10,000,000	17,780,000	27,780,000	27,780,000	27,780,000	166,680,000
			4층	1	93,569,030	196,030,970	289,600,000	10,000,000	18,960,000	28,960,000	28,960,000	28,960,000	173,760,000
			5층~9층	5	93,569,030	201,930,970	295,500,000	10,000,000	19,550,000	29,550,000	29,550,000	29,550,000	177,300,000
			10층이상	11	93,569,030	204,830,970	298,400,000	10,000,000	1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179,040,000
77.5745C	77C	40	1층	2	93,360,048	159,039,952	252,400,000	10,000,000	15,240,000	25,240,000	25,240,000	25,240,000	151,440,000
			2층	2	93,360,048	167,739,952	261,100,000	10,000,000	16,110,000	26,110,000	26,110,000	26,110,000	156,660,000
			3층	2	93,360,048	176,339,952	269,700,000	10,000,000	16,970,000	26,970,000	26,970,000	26,970,000	161,820,000
			4층	2	93,360,048	187,739,952	281,100,000	10,000,000	18,110,000	28,110,000	28,110,000	28,110,000	168,660,000
			5층~9층	10	93,360,048	193,539,952	286,900,000	10,000,000	1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172,140,000
			10층이상	22	93,360,048	196,339,952	289,700,000	10,000,000	1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173,820,000
84.9940A	84A	154	1층	5	102,289,364	168,410,636	270,700,000	10,000,000	17,070,000	27,070,000	27,070,000	27,070,000	162,420,000
			2층	8	102,289,364	177,610,636	279,900,000	10,000,000	17,990,000	27,990,000	27,990,000	27,990,000	167,940,000
			3층	8	102,289,364	186,810,636	289,100,000	10,000,000	18,910,000	28,910,000	28,910,000	28,910,000	173,460,000
			4층	8	102,289,364	199,110,636	301,400,000	10,000,000	20,140,000	30,140,000	30,140,000	30,140,000	180,840,000
			5층~9층	40	102,289,364	205,310,636	307,600,000	10,000,000	20,760,000	30,760,000	30,760,000	30,760,000	184,560,000
			10층이상	85	102,289,364	208,410,636	310,700,000	10,000,000	21,070,000	31,070,000	31,070,000	31,070,000	186,420,000
84.9416B	84B	95	1층	3	102,226,292	170,873,708	273,100,000	10,000,000	17,310,000	27,310,000	27,310,000	27,310,000	163,860,000
			2층	5	102,226,292	180,273,708	282,500,000	10,000,000	1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169,500,000
			3층	5	102,226,292	189,573,708	291,800,000	10,000,000	19,180,000	29,180,000	29,180,000	29,180,000	175,080,000
			4층	5	102,226,292	201,973,708	304,200,000	10,000,000	20,420,000	30,420,000	30,420,000	30,420,000	182,520,000
			5층~9층	25	102,226,292	208,173,708	310,400,000	10,000,000	21,040,000	31,040,000	31,040,000	31,040,000	186,240,000
			10층이상	52	102,226,292	211,273,708	313,500,000	10,000,000	21,350,000	31,350,000	31,350,000	31,350,000	188,100,000
84.8209C	84C	60	1층	3	102,081,070	162,118,930	264,200,000	10,000,000	1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158,520,000
			2층	3	102,081,070	171,118,930	273,200,000	10,000,000	1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163,920,000
			3층	3	102,081,070	180,118,930	282,200,000	10,000,000	18,220,000	28,220,000	28,220,000	28,220,000	169,320,000
			4층	3	102,081,070	192,118,930	294,200,000	10,000,000	19,420,000	29,420,000	29,420,000	29,420,000	176,520,000
			5층~9층	15	102,081,070	198,118,930	300,200,000	10,000,000	20,020,000	30,020,000	30,020,000	30,020,000	180,120,000
			10층이상	33	102,081,070	201,118,930	303,200,000	10,000,000	20,320,000	30,320,000	30,320,000	30,320,000	181,92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 범위 내에서 단지별,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비확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1단지(D-1블록)]

주택형(㎡)	59.8284A	59.9700B	59.6003C	77.9681A	77.7481B	77.5745C	77.6365D	84.9940A	84.9416B	84.8209C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59A	59B	59C	77A	77B	77C	77D	84A	84B	84C

※ 주택형 표시 안내[2단지(B-2블록)]

주택형(㎡)	77.9681A	77.7481B	77.5745C	84.9940A	84.9416B	84.8209C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77A	77B	77C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 유의 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김포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 등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단,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임.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는 지정한 날로부터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됨으로 납부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중도금 무이자 조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 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할 예정임.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부적격 당첨자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입주자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함],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 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의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임.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구분		일 시	장 소
일반기관(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2018.01.16.(화) 10:00~14:00	김포 한강 금호어울림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2-2번지] (문의 031-981-1773)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8.01.16.(화) 16:00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 사항

- 특별공급은 해당 청약신청 해당일시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거주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자가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다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 중 하나의 단지에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 접수시 무주택 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제될 수 있음.

3. 계약체결일 : 2018.02.05.~2018.02.07. [3일간 / 시간 : 10:00 ~ 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이내]

※ 당첨자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1단지(D-1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대상세대 59A	59B	59C	77A	77B	77C	77D	84A	84B	84C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4	2	2	13	4	5	2	4	2	2	4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	1	1	7	2	3	1	2	1	1	2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1	1	6	2	2	1	2	1	1	19
	소계	4	2	2	13	4	5	2	4	2	2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김포시 거주자 (30%)	1	1	1	4	1	1	1	1	1	1	13
	경기도 거주자 (20%)	1	–	–	3	1	1	–	1	–	–	7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2	1	1	6	2	3	1	2	1	1	20
	소계	4	2	2	13	4	5	2	4	2	2	4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김포시 거주자 (30%)	1	–	–	1	–	1	–	1	–	–	4
	경기도 거주자 (20%)	1	–	–	1	–	1	–	1	–	–	4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	–	–	1	–	1	–	1	–	–	4
	소계	3	–	–	3	–	3	–	3	–	–	12
합계		15	6	6	42	12	18	6	15	6	6	13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단, 1단지(D-1블록) 특별공급 자격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59B, 59C, 77D, 84B, 84C 주택형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하려는 분은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배정 물량에 청약 신청하실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2단지(B-2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대상세대 77A	77B	77C	84A	84B	84C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10	2	4	15	9	6	4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5	1	2	8	5	3	24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1	2	7	4	3	22
	소계	10	2	4	15	9	6	46
신혼부부 특별공급	김포시 거주자 (30%)	3	1	1	5	3	2	15
	경기도 거주자 (20%)	2	–	1	3	2	1	9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5	1	2	7	4	3	22
	소계	10	2	4	15	9	6	4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김포시 거주자 (30%)	1	–	–	1	1	1	4
	경기도 거주자 (20%)	1	–	–	1	1	1	4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	–	–	3	1	1	6
	소계	3	–	–	5	3	3	14
합계		33	6	12	50	30	21	15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단, 2단지(B-2블록) 특별공급 자격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77B 주택형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하려는 분은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배정 물량에 청약 신청하실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대상세대[1단지(D-1블록)] : 총 40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59C	77A	77B	77C	77D	84A	84B	8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4	2	2	13	4	5	2	4	2	2	40

– 대상세대[2단지(B-2블록)] : 총 46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77A	77B	77C	84A	84B	8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10	2	4	15	9	6	46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

– 해당 주택형의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해당기관을 정한 후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기관의 우선순위가 없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 현재 김포시 및 수도권(김포시 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 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 수에는 입양 자녀와 임신 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① 임신의 경우: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 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또는 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세대[1단지(D-1블록)] : 총 40세대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59C	77A	77B	77C	77D	84A	84B	84C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	1	1	7	2	3	1	2	1	1	2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1	1	6	2	2	1	2	1	1	19
	소 계	4	2	2	13	4	5	2	4	2	2	40

– 대상세대[2단지(B-2블록)] : 총 46세대

(단위 : 세대)

구분		77A	77B	77C	84A	84B	84C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5	1	2	8	5	3	24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1	2	7	4	3	22
	소 계	10	2	4	15	9	6	46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해당 지역별로 배정된 물량 중 신청자가 미달된 시 · 도의 잔여물량은 경쟁이 있었던 타 시 · 도의 낙첨자를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단, 경기도에서 낙첨될 경우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포함하여 다시 경쟁함)하고 최종 신청 미달되어 발생되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 부터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2015.12.29.)]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 여야 함.(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201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구 분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됨.

– 대상세대[1단지(D-1블록)] : 총 40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59C	77A	77B	77C	77D	84A	84B	84C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김포시 거주자 (30%)	1	1	1	4	1	1	1	1	1	1	13
	경기도 거주자 (20%)	1	–	–	3	1	1	–	1	–	–	7
	수도권 거주자 (50%)	2	1	1	6	2	3	1	2	1	1	20
합계		4	2	2	13	4	5	2	4	2	2	40

– 대상세대[2단지(B-2블록)] : 총 46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77A	77B	77C	84A	84B	84C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김포시 거주자 (30%)	3	1	1	5	3	2	15
	경기도 거주자 (20%)	2	–	1	3	2	1	9
	수도권 거주자 (50%)	5	1	2	7	4	3	22
합계		10	2	4	15	9	6	46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 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가 배정된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 배정에서 낙첨된 자는 나머지 50%가 배정된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순 위	해당사항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요청을 접수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638호, 2015.12.29)에 따름.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 당 자 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서류	• 세무서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주택 건설량의 3% 이내)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상세대[1단지(D-1블록)] : 총 12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59C	77A	77B	77C	77D	84A	84B	84C	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김포시 거주자 (30%)	1	–	–	1	–	1	–	1	–	–	4
	경기도 거주자 (20%)	1	–	–	1	–	1	–	1	–	–	4
	수도권 거주자 (50%)	1	–	–	1	–	1	–	1	–	–	4
합계		3	–	–	3	–	3	–	3	–	–	12

– 대상세대[2단지(B-2블록)] : 총 14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77A	77B	77C	84A	84B	84C	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김포시 거주자 (30%)	1	–	–	1	1	1	4
	경기도 거주자 (20%)	1	–	–	1	1	1	4
	수도권 거주자 (50%)	1	–	–	3	1	1	6
합계		3	–	–	5	3	3	14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 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가 배정된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 배정에서 낙첨된 자는 나머지 50%가 배정된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주택소유 예외사항 미적용

–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청약 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만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 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 김포시 → 수원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 김포시 → 인천광역시 → 수원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하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이 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재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전용면적 85㎡ 이하 평형,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본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김포시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김포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1순위	전 주택형	•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8.01.11.)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 100% 추첨제를 적용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 1, 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3)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해당지역 거주자"), 경기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경기도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해당지역(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함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 시 입력한 과거 가점제 당첨여부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

–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4)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구분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제외)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이용대상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이용방법 및 절차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따라서 공급신청자가 1단지(D-1블록)과 2단지(B-2블록)에 각각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 단지 내에서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1단지(D-1블록)과 2단지(B-2블록)에 중복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1단지(D-1블록)이 우선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 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관련, 별표 1의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제 폐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따라 감점항목 없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 현재 주민등록표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신청 전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이 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관련, 별표 1의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입주자저축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점					
공급신청자 청약가점점수 = ① + ② + ③						
가점제 점수는 상기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산 점수로 산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본인 또는 배우자) –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 증표(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청약가점제 착오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11.)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하며, 적은 경우 미신청자도 최하층에 배정받을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동일 주택형의 최저층을 의미하오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김포시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018.01.16.(화)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한강 금호어울림 견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2-2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18.01.17.(수) 08:00~17:30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8.01.18.(목) 08:00~17:30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이 상실됨.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 및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함)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서약서로 대체 후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자료로 확인)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O		본인확인증표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성명,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함.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함.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청자 제외)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및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직계존속 직접 발급 요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견본주택에 비치